

의안번호	제 38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8월 29일

#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7
----------	-----

발의연월일 : 2023년 8월 29일

발 의 자 : 김현문 · 이정범 · 박병천  
박용규 · 박재주 · 유상용  
이윅희 의원

## 1. 제안 이유

- 기초학력진단검사 도구, 대상, 실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정책과 학교 교육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교육적 실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 진단검사를 기초학력진단검사로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 가. 교사가 기초학력진단검사도구를 학생의 인지적·비인지 영역에 맞춤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대상·평가 방식 등은 매년 수립하는 기초학력보장 시행계획에 따르도록 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과 제2항을 제1호와 제2호로 하여,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학력”,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지원교육”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2. “교육환경”이란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매년”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진단검사”를 “기초학력진단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단검사의”를 “기초학력진단검사의”로, “진단검사 도구를 자율적으로”를 “기초학력진단검사 도구를 학생의 인지·비인지 영역에 맞춤 지원할 수 있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대상, 평가 방식 등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 계획에 따른다.

제14조제2항 중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을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초학력”,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지원교육”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p> <p>② “교육환경”이란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말한다.</p>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0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매년 필요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진단검사의 도구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며, 교사는 진단검사 도구를 자율적으로 활용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기초학력”,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지원교육”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p> <p>2. “교육환경”이란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말한다.</p>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교육청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 ----- ----- 기초학력진단검사 ----- -----.</p> <p>② ----- ---- 기초학력진단검사의 ----- ----- ----- 기초학력진단검사 도구를 학생의 인지·비인지 영역에 맞춤형 지원할 수 있도록 ----.</p>

③ 진단검사는 교사의 판단에 의해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학급 단위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학년·학교·지역·도 단위의 평가 방식은 지양한다.

④ (생략)

제14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생략)

② 센터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과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대상, 평가 방식 등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

# 관계 법령

##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8호, 2021. 9. 24.,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2.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3. “학습지원교육”이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4호, 2022. 3. 25., 제정]

-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 과목·방법 및 일정 등을 알려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평가문항 및 그 결과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